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2023. 12.

한 라 대 학 교

현장실습지원센터

I**진행절차****1.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모집 홍보 및 접수**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실습기관 참여 모집 홍보 · 현장실습 실습기관 접수
-----	--

2. [현장실습지원센터] 학부(과) 실습기관 안내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참여 실습기관 안내
-----	---

3. [학생, 실습기관] 지원서 접수, 선발 및 발표

3단계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 지원서 제출
4단계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선발 및 합격자 발표

4.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전교육 실시 및 상해보험 가입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사전교육 실시 및 상해보험 가입
-----	---

5. [실습기관, 학생, 학부(과)] 현장실습 시행 및 평가, 방문지도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 협약 체결
7단계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른 시행 · 현장실습 평가 후 대학으로 제출
8단계 (학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학생 방문지도

6.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수료자 평가 및 학점 부여

9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수료자 평가 및 학점 부여 · 현장실습 수료자 명단 및 서류 취합
-----	--

7.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결과 보고

10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수료 결과 보고
------	---

II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1학기 운영계획 공고	2023. 12. 8.	○ 학교 학과 공고
실습기관 참여 신청	2023.12. 11. ~	○ 우편 혹은 메일 접수 ○ 접수처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산학협력관 2층 현장실습지원센터 - 이메일: jongran.choi@halla.ac.kr
실습기관 안내	2024. 1. 12.	○ 현장실습지원시스템과 학교 홈페이지 공고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링크: https://intern.halla.ac.kr/index.do
현장실습 참가 학생 신청	2024. 1. 15. ~ 2024. 2. 2.	○ 학생: 희망 실습기관으로 신청 ○ 실습기관: 실습생 접수 진행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현장실습 참가 학생 선발	2024. 2. 5. ~ 2024. 2. 8.	○ 실습기관: 실습생 선발 진행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실습기관 합격자 안내	2024. 2. 9.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통한 합격 안내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 사전교육 일정 공고
사전교육	2024. 2. 16.	○ 사전교육 및 수강신청 안내 ○ 안전교육 진행
현장실습 진행	2024. 3. 1. ~ 2024. 6. 30.(4개월)	○ 현장실습 진행 일주일 전 협약서 작성 ○ 운영계획에 맞는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순회지도 교원 현장방문 실습지도 - 온라인 협약 진행
현장실습 종료 및 제반서류 제출	2024. 6. 19. ~ 2024. 6. 30.	○ 실습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점수 부여 및 수료 보고	점수 부여: 2024. 6. 26. 수료 보고: 2024. 7. 12.	○ 수료자 점수 부여 및 수료 보고

※ 위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Ⅲ 운영계획

1 정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내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계획·홍보·관리·결과보고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 현장실습 수업방법

-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 이라 한다)란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현장실습생

- 현장실습생(이하 “**학생**” 이라 한다)이란 학점 및 실무경험, 실습지원비를 제공받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현장실습을 신청·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현장실습기관

-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한 국·내외 기업, 기관 등을 말한다.

□ 현장실습협약

- 현장실습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이란 대학과 실습기관, 학생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전일제에 맞추어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기준으로 운영으로 한다.
- 표준형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100분의 10이상 25이하로 한다.
- 자율형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1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수구분	실습기간(실출석일)	학점	
표준형	정규학기	현장실습1(16주)	전공선택	4개월(80일) 이상	12학점
		현장실습2(16주)	전공선택	4개월(80일) 이상	12학점
	계절학기	현장실습1(4주)	전공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현장실습2(4주)	전공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현장실습3(4주)	전공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현장실습1(8주)	전공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현장실습2(8주)	전공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현장실습3(8주)	전공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자율형	자율형현장실습1(4주)	일반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자율형현장실습2(4주)	일반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자율형현장실습3(4주)	일반선택	1개월(20일) 이상	3학점	
	자율형현장실습1(8주)	일반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자율형현장실습2(8주)	일반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자율형현장실습3(8주)	일반선택	2개월(40일) 이상	6학점	

※ 실습기간은 개월단위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실습시간에 따라 기간 조절이 가능하다.

※ 최소 기간: 표준형, 자율형 - 1개월 이상(ex. 06.15. ~ 07.14.)

※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 [표1-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학과는 학과에서 강좌 별도 개설

※ 복수학위생의 경우 교과목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 아래 [표1-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1-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준]

1	<p>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함</p>
	<p>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p> <p>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p> <p>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p> <p>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시행하는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에 관련된 학과 등</p> <p>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p>
2	<p>의무 현장실습 대상학과 외 제외 대상</p>
	<p>-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 ※ 교육부 고시(제2021-33호) 제7조2항에 명시되어있는 제외 대상임.</p>
3	<p>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p>
	<p>- 표준형: 국가가 규정한 월 최저임금 기준 75%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자율형: 직무 비율에 맞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최소 직무 비율: 15%, 해당 비율 실습지원비: 301,587원 이상 지급(2023년 기준)</p>
4	<p>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p>
	<p>- 현장실습학기제의 의미를 고려하여 초과할 경우의 현장실습은 제외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운영은 불가. 단, 운영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면 참여할 수 있음.</p>
5	<p>무급 혹은 비연속적으로 운영 될 경우</p>

	<p>- 무급 및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p> <p>※ 교육부에서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서는 무급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가능하나 본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서는 실습시간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무급이 불가하다.</p>
6	<p>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p> <p>-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 등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p> <p>※ 현장실습은 <u>취지 및 운영형태가 대학의 직접적인 주관 하에 실시하는 것</u> 이어야 함. 즉,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하거나 (공채)인턴 등에 합격한 경우는 학생 개인의 목적(아르바이트, 임금 등) 및 기업의 목적에 따른 형태로, <u>대학이 배제된 상황</u>이므로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p>
7	<p>기타 운영형태</p> <p>가.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의 경우 제외</p> <p>나.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p> <p>다.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은 제외</p> <p>라.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제외</p> <p>- 협약 또는 문서는 <u>현장실습 이전에 체결 또는 시행</u>하여야 함</p> <p>- 문서를 근거로 할 경우 <u>쌍방 간 의사합의를 증빙</u>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p> <p>마.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p>

3 실습기관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 가능한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인정기준(수정필요)

구분	내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섭외)하는 경우 - 실습기관으로부터 참여 의뢰를 받은 경우 ○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 학생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사업장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 기준 75% 이상 지급 가능한 경우 - 자율형: 실습 직무 비율에 맞는 실습지원비 이상 지급 가능한 경우 ※ 표준형: 월 최저임금 기준 75% ~ 100% / 자율형: 최저임금 X 실습 직무 비율 ※ 자율형 최소 실습 직무 비율 15%의 경우 - 원(2024년 기준) ○ 실습지원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실습시간: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X 유급 휴일 실습시간 수 - 월 실습시간: (주 실습시간 수 ÷ 7) X (365 ÷ 12) ②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지급: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비율 X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4 대상학과

□ 현장실습 인정학과 분류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열/학과/전공 등의 경우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외 대상이다.
- 현장실습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 제외 대상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5 대상학생

□ 대상학년

-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 편입생은 정규학기 2학기 이상 이수 후 가능

□ 자격요건

- 학점인정 대상에 부합하는 자격요건 준수

구분	내용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현장실습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해당 학기를 <u>등록</u> 하여 <u>학점을 취득하는 학생</u>

6

개설기준 (2024학년도 기준)

□ 정규 교과목 운영

- 현장실습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

○ 학점 인정기준

- 학점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부여하되, 강좌별 실습기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부여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학점은 정규학기의 경우 해당 현장실습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수강 횟수와 관계없이 매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최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성적 부여기준

- 성적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전체 항목의 평균이 60/100이상인 경우 평가등급은 'P(Pass)'로 하고, 이하는 'N(Non-Pass)'로 하며, 점수 및 평점 등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7

현장실습 지도방문 지원계획

□ 지도교수 방문지도 지원

- 현장실습 지도교수 방문지도에 따른 출장비 정액 4만원 지급, 최대 2회 까지만 지원.
- 방문지도시 동일지역 내 방문은 최소 2개 이상, 최대 4개 이하 업체 방문을 원칙으로 함.
- 방문지도 후 실습생이 실습을 취소하여도 방문지도는 인정함.
- 원주권 실습기관 방문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며,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방문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대학(지원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관리를 수행한다.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 관련 규정 제·개정
 - 실습기관의 참여 신청·접수 관리 및 선정
 - 학생 참여 신청·접수 관리
 - 현장실습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상해보험가입
 -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

□ 대학(학부(과))

- 학부(과)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시행계획에 따라 실습기관 및 학생의 참여도모를 위한 홍보 및 실습지도를 시행한다.
- 학부(과)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실습기관 참여 섭외 및 신청방법 홍보
 -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홍보
 - 실습기관 및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

□ 학생

- 현장실습 운영 절차에 따른 참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성실한 실습 수행

내 용	서 식
현장실습 참여 신청	◦ 현장실습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학생)
실습수행	◦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 현장실습학기제 중간점검서
실습완료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 설문조사서

□ 실습기관

-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습계획 수립
- 학생 선발, 지도, 출결관리, 교육, 평가 실시
- 실습지원비 지급
 - ※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 기준 75%이상 혹은 직무비율에 따른 임금
- 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내 용	서 식
현장실습 참여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실습기관)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 우편 제출: 강원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산학협력관 2층 현장실습지원센터 (수신자: 현장실습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jongran.choi@halla.ac.kr ◦ 사업자등록증
출석관리 및 학생평가	◦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 및 평가표 (실습기관)
학생 안전 관련	◦ 실습지원비 급여내역 사본 ◦ 설문조사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 지급은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대학은 실습 수행을 위한 교통비 등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실습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